

①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장 한지용	051-773-5460
		사무관 박혜진	051-773-5463
		주무관 김서진	051-773-5464

I. 사업개요

1. 목적

- 여성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나잠어업에 주로 종사하여 직업 질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으며 살림·육아 등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높은 어촌유지 기여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2.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6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 검진인원 증가 달성률(%)	110	-	-	200.3	113.9	'27년 2월	(‘26년 검진인원 / ‘25년 검진인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8년
합 계	1,187	1,187	1,187	1,187
- 국 비	651	651	651	651
- 지방비	429	429	429	429
- 자부담	107	107	107	107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관리기관) 검진의료기관 지정, 건강검진 비용 청구 점검, 시스템 관리 등
- (검진의료기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원급 및 의원급),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지자체 병원선 운영조례(시행규칙) 중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기관
- (검진대상자) 검진을 신청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을 신청한 51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
 -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 신고어업인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자로서 해당 시·군·구에서 어업활동을 확인받은 자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및 2025년도 특화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

<여성어업인의 정의>

- "여성어업인"이란 여성으로써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관리기관) 검진의료기관을 지정, 검진의료기관 관리, 검진결과DB 구축, 어업안전보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한 기관
- (지자체) 병원 접근이 용이한 병원급(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의원급포함) 의료기관·시설(지정요건 충족)을 갖춘 지자체,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자체
- (선정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검진의료기관 지원대상

- (지정대상) 특화건강검진(표1 참조) 및 예방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병원급(의원급포함) 의료기관(표 2 참조), 이동검진형(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 각 병원에서 운영하는 검진버스)
 - 검진의료기관, 검진버스의 시설 및 인력은 근골격계 질환 중심으로 선정하되, 낙도 등 의료기관 접근 취약지역 검진을 위해 검진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 인력, 검진항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검진의료기관 지정 요건에 관련 교육 이수 조건 포함(표3 참조)
 - 병원선은 검진의료기관 지정요건, 검진의료기관 교육요건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검진항목은 해수부장관과 협의 필요
-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검진을 신청한 시군구에 검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검진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관리기관이 지정

< 표 1.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세부내역 >

영역(유해요인)	항목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 중량물취급)	슬관절(Both Knee Rosenberg view)
	요추(L-spin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view)
	수골(Both hand Anteroposterior view)
	근골격계증상 선별설문
	근골격계장애 평가설문(Quick DASH, WOMAC-SF, ODI)
	근골격계질환 신체진찰
골절위험 (낙상)	골밀도검사(DEXA, 요추와 대퇴골), QCT(요추) * 만 54, 60, 66 세 제외
	근육량측정(다주파수측정법)
심혈관계질환 (온열, 스트레스)	LDL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HbA1C)
난청(소음)	순음청력검사 (단, 병원선 제외 항목)

* 검진에 대한 사후관리교육 포함되며 검진항목도 병원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표 2.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검진의료기관 지정기준 >

구분		기준
인력 기준	① 의사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 (* 병원선은 일반의 1명 이상)
	②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1명 이상
	③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인 이상
	④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인 이상
	⑤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인 이상
	교육 이수	①~③의 인력은 해당 분야의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교육 이수(표 3)
장비 시설 기준	임상검사장비	자동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단, 검체 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청력검사실	오디오부스, 순음청력검사장비 (단, 병원선 장비 미보유 가능)
	방사선 촬영장치, 탈의실	근골격계검사가 가능한 방사선 장비 이중에너지방사선 흡수계측법 검사기(DEXA)
	교육실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18m ² 이상의 공간

< 표 3.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검진인력 교육과정 >

영역	교육 내용	소요시간	교육대상
공통	검진 프로세스	0.5시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검진 프로그램 입력		
의사	근골격계질환의 방사선학적 평가	0.5시간	의사
	검진 판정 및 사후교육 의뢰		
의사 외 종사자	사후관리 상담 교육	0.5시간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공통 예방교육		

* 검진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검진인력 교육과정 탄력적으로 적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검진비 사용용도) 여성어업인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0%(2만원 상당)의 자부담금만 병원에 납부, 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자체에서 검진의료기관에 나머지 90%를 입금
 - 병원선*은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부담하므로 지자체 병원선 운영계획과 여성어업인 수검인원만큼 공중보건의 진료장려지원, 검진시약 구입, 검진프로그램 설치비,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비용, 기타 검진에 관련 부대비용 등에 사용가능
- (행정비 사용용도) 검진자 및 검진의료기관 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건강검진비용: 지자체경상보조 50% (병원선 국비 100%)
 - 행정비: 민간경상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건강검진비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구분	건강검진비용	국비	지방비	자부담
51세 이상	200,000원	100,000원	80,000	20,000원
54세, 60세, 66세*	160,000원	80,000원	64,000	16,000원

* 일반건강검진에서 54세(72년), 60세(66년), 66세(60년) 여성에게 제공하는 골밀도검사 비용 감액, 병원선의 경우에는 여성어업인 수검인원과 검진항목 사업비:(수검인원×국비건강검진비용) 내에서 국비부담금을 지자체 병원선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지자체) 지방비 외에 자부담 분(검진비 10%, 2만원 내외) 추가 지원* 가능
 - * 수협 등 지역단체와 협조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가능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행정비 국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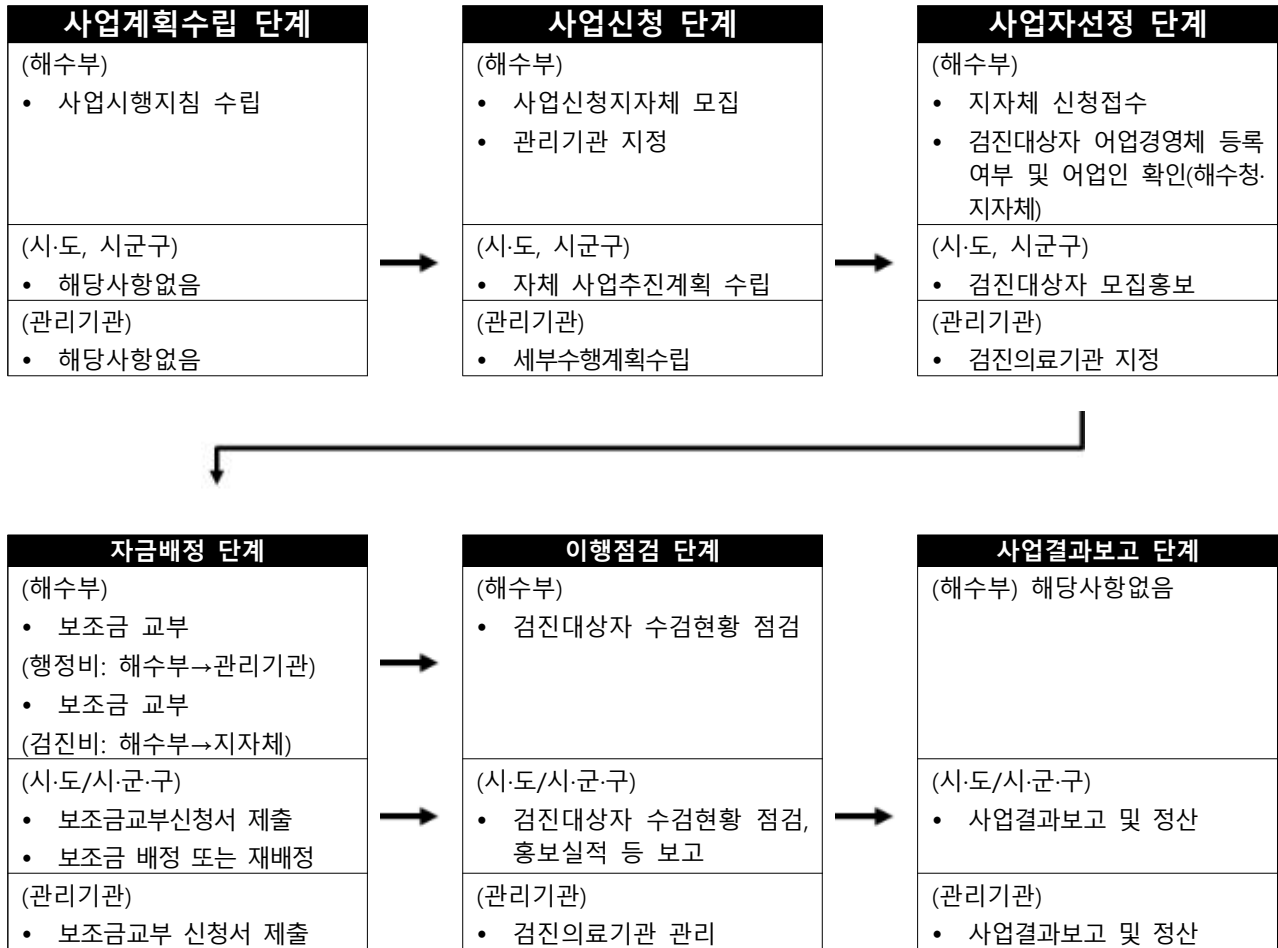
7. 검진자 인센티브

- '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어업인안전보험 할인율(5%) 적용
 - * '26년 4~5월부터 시행이나, '26년 어업인안전보험 신규 가입자는 소급적용 예정

8. 중요재산 관리: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 가내시 통보(예산 확정 시)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1월)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 모집)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참여 지자체 모집
- (관리기관지정) 검진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검진의료인력 교육(온·오프라인) 및 질 관리, 검진결과DB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수립된 자체 세부사업계획과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 (검진대상자) 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진대상자 신청접수 후 검진실시, 지자체는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 (검진의료기관 지정) 관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검진의료기관 신청서 접수,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검진의료기관으로 지정
 - *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은 사업참여를 원할 경우 검진가능항목 검토 후 검진의료기관으로 즉시 지정
- (검진시행) 검진의료기관은 검진대상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 및 사후예방 교육 상담 진행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 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보조사업자(지사체, 관리기관)

- 사업내용에 있어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사업비 변경, 세부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시 변경된 사항이 발생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취득 즉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정보공개를 하고 아래의 기준으로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건축물	10년(준공일로부터)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성과,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한 지사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이를 반영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보조사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의 회수, 수정 시행, 보완 등의 제재 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주체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정산보고》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지자체보조사업은 제외)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여성어업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본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과 국민건강검진 이외 여성어업인의 주요 건강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하는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6대 근골격계 질병, 골절위험,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청력이상을 평가합니다.

검진대상은 51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입니다. 여성어업인은 어업 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신청인 주소 _____

연락받을 전화번호 _____

어업인 확인*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확인서

*본인의 어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진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p> <p>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검진예약안내를 위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p>	<p>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확인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수집·이용목적: 검진대상 자격확인 ○ 보유·이용기간: 3년 <p>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input type="checkbox"/> 확인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받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지정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정 거주지역의 지정 검진의료기관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공목적: 건강검진 예약안내 ○ 보유·이용기간: 1년
--	---

위와 같이 본 건강검진을 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_____
신청인의 이름(정자체)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예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라. 필요성

마. 사업추진 조직 및 주요업무

바. 주요사업 내용

사. 성과지표(주 지표, 보조지표) 및 목표

* 주 지표는 지침 지표활용

아. 추진체계

2. 세부추진계획

* 주요과정별 세부 내용 및 기준, 방법, 대상선정 등

3. 세부 추진일정

4. 예산 세부내역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실 적 보 고 서 (예시)

I.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2 추진방향
- 3 근거법령
- 4 사업개요
- 5 추진경과

II. 주요사업 내용(실적 및 성과)

- 1.
- 2.

III. 성과 및 향후계획

1. 성과(주 지표, 보조지표) 및 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 달성내용, 기여도 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2. 문제점
3. 향후 계획

IV. 정산 내역서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 00%

○ 사업내용 :

예산과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